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 | |
|---|-----------|
| 선 | 기관(부서)의 장 |
| 람 | |

제2021-30호
2021. 4. 9.(금)

차 례

조 례(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0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1호)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502호)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503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4호)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5호) 3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조례 제1506호) 4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7호)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조례 제1508호) 4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09호) · 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1510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11호)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조례 제1512호) 63

규 칙(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35호) 6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1호) 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2호) 8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3호) 89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56호) 9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57호) 106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30호) 109

공 고(2)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공고 제2021-359호) 110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공고 제2021-375호) ... 111

입법예고(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363호) 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370호) 1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372호) 1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373호) 1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374호) ... 214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을“(국장 및 실·과·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실·단·국의 설치)”를“(실·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감사실,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자치행정국)”을“(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문화관광체육과, 회계정보과”를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

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제복지국)”을 “(공동체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제복지국에 경제정책과, 에너지과학과, 기후환경과”를 “공동체복지국에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로, “여성가족과, 위생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의 제목 “(안전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 “주택정책과, 건설과, 공공청사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단·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단·국별”을 “실·국·단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단·국별”을 “실·국·단별”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실·단·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경제정책과”를 “공동체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과장”을 삭제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하고, “교육공동체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예술정책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③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③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란 중 “실·단·과장실”을 “실·과·단장실”로 한다.

④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④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④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7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청소년아동친화팀장”을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⑤8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년아동친화팀장”을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⑥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3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⑥5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정책팀장”을 “여성친화팀장”으로 한다.

⑥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⑥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⑥8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⑥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교육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미래교육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환경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각각 “기후환경과”로, 고용노동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건축과”를 “주택정책과”로, 금융위원회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문화재청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공공청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팀장”을 “신청사건립팀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팀장”을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팀장”을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하수팀장”을 “하수하천팀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급”을 “실·과·단장급”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획홍보실·감사평가실·새로운대덕추진단”을 “기획홍보실·감사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치행정국(동 포함)”을 “행정지원국(동 포함), 공동체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제복지국”을 “기후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도시

국”을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p.19~p.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새로운대덕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경제복지국”을 “공동체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을 정비하며, “기후경제국”을 신설하여 기후위기·지역경제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함(제3조).
- 나.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도시안전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기후경제국”에 설치하는 과를 신설함(제5의2조).
- 라.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9명”을 “7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4명”을 “7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직급별 | | 기관별 |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동 |
|-----|-------|-----|---|-----|----|-------|------|-----|----|
| | | 총 | 계 | | | | | | |
| 총 계 | | | | 757 | | | | | |
| 정무직 | 소계 | | | 1 | | | | | |
| | 구청장 | | | 1 | 1 | | | | |
| 일반직 | 소계 | | | 754 | | | | | |
| | 3급 | | | 1 | 1 | | | | |
| | 4급 | | | 5 | 4 | | 1 | | |
| | 5급 | | | 46 | 26 | 3 | 4 | 1 | 12 |
| | 6급 이하 | | | 702 | | | | | |
| 별정직 | 소계 | | | 2 | | | | | |
| | 6급 상당 | | | 1 | 1 | | | | |
| | 7급 상당 | | | 1 | 1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및 적극행정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39명”에서 “757명”으로 1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24”명에서 “740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함(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등) ① 장학금의 신청대상은 대덕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1. 통장 근속연수

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3.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총 2회를 넘어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선발 횟수는 기존 조례에 따른 장학생 선발된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 대학생까지 확대함(제2조제1항).
- 나. 다른 장학금이 대덕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장학금 차액 지급 근거를 규정함(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제1항).
- 라.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제8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 수행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

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함(제6조).

- 1)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변경함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함.
- 2) 사업소분의 세율이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지고, 시세이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이 자치구세이던 재산분과 통합, 자치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이관됨.
- 3)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구 세수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대전광역시 시세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기본세율”부분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세율조항을 신설 및 정비함.
- 4) 「지방세법」 제84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법」 제84조의7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6) 음악산업란 다음에 7) 애니메이션 산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7) 애니메이션 산업 | | | |
| • 애니메이션업 신고 | 1건 | 20,000 | |
| •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 1건 | 10,000 | |
|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 1건 | 4,000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0. 6. 4.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애니메이션업 신고 및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 애니메이션업 신고 :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 1건 4,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체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

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 및 탄소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대덕구의 탄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탄소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탄소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민 참여 및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마.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탄소인지예산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
- 사. 탄소인지예산제의 구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용량 1,000킬로그램 이하)으로 작업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수집·운반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을 통한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 따라 3인 1조와 주간작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제9조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
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병역명문가 예우의 적용범위를 정함(제3조).
-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
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0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
하여 구에 주민등록을”로, “월 2만원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 제5호 · 제11호 · 제12호 · 제13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

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지원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액 표(제5조제1항 관련)

| 구 분 | 종 목 | 단위 | 금 액 | 비고 |
|-----------|-----------------------|----|--|---------------------------------|
| 1. 제증명 발급 | 가. 진단서 | 1통 | 500원 |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 진단용 |
| | 나. 건강진단결과서 | 1통 | 「식품위생 분야 종 사자의 건강진단 규 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 다.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 1통 | 300원 | |
| | 라. 결핵(검진·치료경과)확 인서 | 1통 | 500원 | |
| 2. 유료접종 | 가. B형간염 | 1회 | 유료접종수수료는 백신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 함. |
| | 나. 장티푸스 | | | |
| | 다. 신증후군출혈열 | | | |
| | 라. 기타접종 | 1회 | 백신구입원가 및 소모품 비용 | |
| 3. 검사 | A형간염 | 1회 | 해당연도 검사 원가 (검사시약비+재료비)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개인 중심의 체력단련실과 건강프로그램 유료 이용 체제에서 자율적 소모임 중심의 무료 이용 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는 주민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함(제6조제8호 및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팟캐스트(Pod cast)”란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방송시스템”이란 마을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장비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추진 기본방향
2.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견학, 매체 제작, 멘토링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미디어 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
5. 마을미디어 홍보사업
6. 팟캐스트 방송페이지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 활용)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단체가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참여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팟캐스트 방송제작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디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대덕구의 팟캐스트 방송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소식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팟캐스트 방송제작단(이하 “제작단”이라 한다) 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작단원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덕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직장인,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회원으로써 미디어 제작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작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작단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마을미디어 활동가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규정함(제3조).

다.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팟캐스트 방송제작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렬·직급(제3조 관련)

| 위원회별 | 직 위 | 직렬·직급 |
|---------|----------|---|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 행정복지위원회 | | |
| 경제도시위원회 | 경제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전문위원 직위명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전문위원 직위명을 조정하고자 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실·단장”을 “국·실장”으로 하고, “과장”을 “과·단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자치분권과장·세무과장·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동체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교육과장·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후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에너지과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 제목“(안전도시국)”을“(도시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를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 공공청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단·과”을 “실·과·단”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단·과”을 “실·과·단”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직 위 | | 성 명 | 의 결 | | 서 명 |
|-------|---------------|-----|-----|---|-----|
| | | | 가 | 부 | |
| 의 장 | 구 청 장 | | | | |
| 부 의 장 | 부 구 청 장 | | | | |
| 위 원 | 행 정 지 원 국 장 | | | | |
| 위 원 | 공 동 체 복 지 국 장 | | | | |
| 위 원 | 기 후 경 제 국 장 | | | | |
| 위 원 | 도 시 안 전 국 장 | | | | |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7조의1제3호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단·과장급”을 “실·과·단장급”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을 “실·과·단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24조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제2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아래쪽 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단·국·과”를 “실·국·과·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장·단장·국장·과장”을 “실장·국장·과장·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 회계정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5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회계정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내지 10호, 18호서식 결재란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경제정책과 및 도시계획과”를 “공동체과 및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업무주관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주관실·단·과장”을 “업무주관실·과·단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서명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사무 전결 기준 (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1 ~ p114)

<별지 3> 부칙 제2조제21항 관련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관 직 명 | 본 청 | 구의회 | 제1관서(동 제외) | 기타관서·임시관서 | 동 |
|------------------------|--|---------------|---|---|---|
| 회 계 책 임 관 | 행정지원국장 | | | | |
| 징 수 관 | 행정지원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관서의 장 | 동장 |
| 분 임 징 수 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단장 | |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 | | |
|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 분 임 재 무 관 | 회계정보과장, 각 실·과·단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도서관장(신탄진, 안산, 송촌)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
| 총괄채권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 | | | |
| 채 권 관 리 관 | 소관 실·과·단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관서의 장 | 동장 |
| 총괄부채관리관 | 부구청장 | | | | |
| 부 채 관 리 관 | 소관 실·과·단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홍보실장 | | | | |
| 통 합 지 출 관 | 운영지원과장 | | | | |
| 지 출 원 | 경리팀장 | 의정팀장 |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보 |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
| 수입금출납원 | 세무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실·과·단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 세입업무 팀장 | 세입업무팀장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재무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주사보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단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 | 각 실·과·단 서무업무팀장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 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 재무업무담당자 | 재무업무 담 당 자 | 재무업무담당자 | 재무업무담당자 | 재무업무담당자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 | | | |

[별표 1] 구 본청 실·과·단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19 ~ p.136)

[별표 2] 보건소의 분장사무 (제11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37 ~ p.138)

[별표 5] 동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1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단·국·과의 명칭을 신설·변경, 삭제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및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나. 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 제7조, 제7의2조 및 제8조).
- 다. 실, 과 및 동의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3~p.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중 일반직 4급 : 3명 → 4명, 5급 : 45명 → 46명, 6급 : 163명 → 171명, 7급 : 220명 → 225명, 9급 : 87명 → 90명 총 18명 증원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를“(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의”를 “사업소분의”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의 보통징수)”를“(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의”를 “사업소분의”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중 “주민세(재산분)”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 서식번호 | 서 식 명 | 비고 |
|------|-----------------------|----|
| 1 |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 |
| 2 |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 |
| 3 |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 |
| 4 |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 |
| 5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 |
| 6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
| 7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 |
| 8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
| 9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 |
| 10 | 건축물 조사표 | |
| 11 | 주택 조사표 | |
| 12 | 선박 조사표 | |
| 13 | 항공기 조사표 | |
| 14 |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 |
| 15 |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 |
| 16 |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 |
| 17 |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제8조 및 제9조).
- 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개정함(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평가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건축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제4호다목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속직원(실·단·과장급)”을 “소속직원(실·과·단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자(감사평가실장)”을 “감사자(감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1호, 제1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가목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區廳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

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을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홍보실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직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실·

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환경순찰반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주무실·단·과”를 “주무실·과·단”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주무 실·단·과”를 “주무 실·과·단”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하며,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결재란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실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기유물 및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예술정책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부서란의 “기획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민원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과 실·단”을 “국과 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민원사무명란 중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건축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본 증 소지자의 임무 제2호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조물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6급 공무원(팀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가목 및 같은 호 제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제다목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같은항제2호제가목 중 “감사평가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8조제1호제가목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가목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 서명또는날인 |
|---------|---------------|-----|------|---|--------|
| | | | 가 | 부 | |
| 위 원 장 | 부 구 청 장 | | | | |
| 부 위 원 장 | 도 시 안 전 국 장 | | | | |
| 위 원 | 행 정 지 원 국 장 | | | | |
| 위 원 | 공 동 체 복 지 국 장 | | | | |
| 위 원 | 기 후 경 제 국 장 | | | | |
| 위 원 | 보 건 소 장 | | | | |

③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③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 중 “감사평가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③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
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감사평가실”을 “감사실”로 한다.

[별표]

공무직 정원표 (제7조 관련)

| 직종별 부서별 | 계 | 단순노무 | 기술인부 | 공사인부 | 환경관리 요원 | 행정실무원 | 청원경찰 | | |
|------------|-----|---|---------------------------|-------------------------|--------------|---|------|----|----------|
| | | | | | | | 소계 | 경비 | 단속 감시 |
| 총 계 | 213 | 38 | 14 | 28 | 89 | 36 | 8 | 5 | 3 |
| 본 청 | 181 | 30 | 13 | 28 | 89 | 13 | 8 | 5 | 3 |
| 기획홍보실 | 2 | 2 구청홍보자료수집 1 구청전략홍보사무 1 | | | | | | | |
| 운영지원과 | 14 | 9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학습업무지원 1 | 1 영양사 | | | | 2 | 2 | |
| 자치분권과 | 1 | 1 전화안내원 | | | | | | | |
| 세무과 | 1 | | 1 채납징수 | | | | | | |
| 민원봉사과 | 3 |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 | | | | | | |
| 토지정보과 | 2 | 2 도로명주소관리 1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 | | | | | | | |
| 문화관광체육과 | 3 | 2 체육관관리 | | | | | 1 | 1 | |
| 복지정책과 | 5 | | | | | 5 통합사례관리사 | | | |
| 사회복지과 | 5 | 2 장애인편의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 | | |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 | |
| 여성가족과 | 5 | | | | | 5 드림스타트4 특화분야교사1 | | | |
| 기후환경과 | 92 | | 2 불법투기단속 | 1 재활용인부 | 89 환경관리요원 | | | | |
| 공원녹지과 | 13 |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 | 10 공원녹지관리 | | | 2 | 2 | |
| 교통과 | 4 |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정차단속업무지원 2 | | | | | | | |
| 도시계획과 | 3 | | | | | | 3 | | 3 |
| 안전총괄과 | 1 | 1 민방위시설관리 | | | | | | | |
| 주택정책과 | 4 | |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 1 | | | | | | |
| 건설과 | 21 | 1 지하수검침 | 5 노점상단속 |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 | | | | |
| 공공청사과 | 4 | 2 청사실내청소 | | 2 청사실외청소 | | | | | |
| 의회사무과 | 2 |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 1 음향기관리 | | | | | | |
| 보건소 | 17 | | | | | | | | |
| 보건행정과 | 3 | | | | | 3 결핵관리사업 1 예방접종등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 | | | |
| 건강정책과 | 14 | | | | | 14 통합건강증진사업 | | | |
| 복합문화센터 | 10 | 4 도서정리 | | | | 6 개관시간연장사업 | | | |
| 동 | 3 | | | | | | | | |
| 송촌동 | 2 | 2 송촌문화의집관리 | | | | | | | |
| 신탄진동 | 1 | 1 신탄문화의집관리 | | | | | | | |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3 ~ p.15

[별표 2] 의회사무과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6

[별표 3] 직속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7

[별표 4] 사업소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8

[별표 5] 동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9 ~ p.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부서)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
덕구 혁신정책자문관 및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를 “대덕구”로, “대덕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대덕구청장”으로,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
구 혁신정책자문관(이하 “혁신자문관”이라 한다)을 두고 혁신자문관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을 “위한 혁신정책자문관 및 정책특별보좌
관을 두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혁신정책자문관(이하 “혁신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책특별보좌관) 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한다.

1. 주요 정책 · 정무 분야
2. 특정 현안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혁신자문관’은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본다.

제7조 중 “혁신자문관”을 “혁신자문관 및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혁신자문관”을 “혁신자문관 및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정의 주요 정책·정무, 특정 현안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청장의 자문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훈령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수당, 운영세칙 규정을 정비함(제명, 제1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나. 주요 정책·정무 및 특정 현안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의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지 번 주소 | 도 로 명 주소 | 부여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
|------------|--------------|-------------|-------------|--|
| 오정동 441-22 | 한남로102번길 25 | 2021. 4. 9. | 건물신축 | 한남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오정동 441-23 | 한남로102번길 23 | 2021. 4. 9. | 건물신축 | 한남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오정동 442-10 | 대전로1066번길 37 | 2021. 4. 9. | 건물신축 | 대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오정동 467-29 | 한남로113번길 31 | 2021. 4. 9. | 건물신축 | 한남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오정동 740-15 | 홍도로73번길 46 | 2021. 4. 9. | 건물신축 | 홍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갈전동 504 | 대청호수로 1508 | 2021. 4. 9. | 건물신축 | 대청호수의 명칭을 반영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 | | |
|-------------|--------------|---------------------------------------|---------------------|----------------------------|
| 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 | |
| | 대표자 (성 명) | 회덕동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76 (읍내동) |
| 소하천명 | | 진 골 천 | | |
| 점용·사용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99-1 외 2필지(796, 796-15) | | |
| | 면적 | 370㎡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 | 기간 | 2021.4.6.~ 2025.12.31. | | |
| | 목적 및 사유 | 토지의 점용(조경수 식재)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끝.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1. 4. 9. ~ 2021. 4. 23.
2.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별관4층(☎042-608-5374)
3. 주요내용

| 사업명칭 | 사업시행위치 | 사업시행면적 | 사업시행자 | 사업내용 |
|--------------|---------------------------|--------|-------------------------|----------------------------|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대덕구 오정동 449-3번지, 449-10번지 | 389.9㎡ | (주)세종종합건설 (대표 : 김영기) | 지상1~5층, 2개동, 다세대주택 16세대 |

4. 변경내용

| 구분 | 시행기간 | 비고 |
|----|-------------------|--------------------------|
| 당초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10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8. 11. |
|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90일 | 변경사유 : 동절기 공사 불가 |

5.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공람기간 중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 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4.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 (전화 : 042-608-5293, FAX : 042-608-3845, E-mail : eunu042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담당자 최은우(전화 : 042-608-52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세입·세출예산외”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외”를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중”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대전광역시 대덕구</u> <u>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u>여</u>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주차장특별회계 <u>수입금중 주차장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u></p> <p>2. ~ 4. (생략)</p> <p>5. <u>기타</u> 수입금</p> <p>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u>세입·세출예산외</u>로 처리한다.</p> <p>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p> | <p><u>대전광역시 대덕구</u> <u>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u></p> <p>제1조(목적) ----- ----- ----- <u>따라</u> ----- ----- -----.</p> <p>제2조(기금조성) ----- ----- ----- <u>각 호</u>----- --.</p> <p>1. ----- <u>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u>-----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의</u> --</p> <p>제3조(기금의 관리) ①----- <u>세입세출예산 외</u>-----.</p> <p>②-----</p> |

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 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2. (생략)
3. 기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6년 6월 30일-----
-----.

제4조(기금의 운용) -----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
에-----.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인정하는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9명 -

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③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
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2. (생략)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
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
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에 전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

-----.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2020. 12. 8.)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명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변경함(안 제명).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함.

1)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3조)

- 2)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 3)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16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시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사.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 아.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토지 등의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21. 4. 9. ~ 2021. 4. 29.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04.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전화 : 042-608-5302, FAX : 042-608-3829, E-mail : sook50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담당자(042-608-53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

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교부”라 한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주소정보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6조(광고의 비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이외의 광고 비용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한다.

제7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을 위한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 촉진사업
-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분실되었거나 훼손·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제출일) |
|--------|-----|-------------|
| | | 2021.0.0.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 6. 2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 6. 23. 시행) 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2)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성격 구분 없이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3)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4)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5) 사용료·대부료 등의 납부 유예 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12. 10.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변경함(안 제29조 및 안 제65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2020. 2. 4.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4.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전화 :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 이정원(전화: 042-608-5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토지안에 위치하여”를 “토지 안에”로 한다.

제8조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래하거”를 “주거”로 한다.

제16조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일정규모”를 “일정 규모”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토석”을 “원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0조제4항 후단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

으로, “이조”를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⑧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제3항 본문 중 “만료되거”를 “끝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6월 이내”를 “200만원 이하: 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9월 이내”를 “300만원 이하: 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제3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전단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를 “폐도·폐구거

(閉溝渠)·폐제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치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로, “면적범위 내”를 “면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도법」 제4조”를 “「사도법」 제4조”로 한다.

제41조 중 “조림하여”를 “조림(造林)하여”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비한”을 “두루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1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함으로써”를 “지킴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한다.

제59조 중 “사용도중”을 “사용 중”으로, “인하여 파괴”를 “파괴”로,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조
례 시행 전에 일반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 및 제7항 개
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개정 규정은 이 조
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4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p> |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p> <p>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법」 제57조----- ----- -----</p> |

3. ~ 5.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생략)

④ (생략)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토지 안에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

----- 가능하면 -----

-----.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략)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

----- 규칙에서 -----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거-----

-----.

제16조(무상사용기간) -----

----- 받-----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
-----.

1. (현행과 같음)

2. -----

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
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
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
수익허가,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
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
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
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
산
- 5.·6. (생략)

----- 줄 -----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료-----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조-----

- 5.·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 50 이상-----

② -----
----- 해당 -----
----- 40 이상-----

1. 2.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25 이상-----

1.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

----- 25 이상-----

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5. (생략)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였을 때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10 이상-----
-----.

④ -----

----- 10 이상-----
-----.

1.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4. 5. (현행과 같음)

6. ----- 50명 이상-----

----- 일정 규모-----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토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

② ----- 원석-----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
----- 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⑤ 제1항에도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 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

계산식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영 제3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 조-----

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 3. (생략)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

1.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나. ~ 사.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생략)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 라.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삭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

<신 설>

<신 설>

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⑧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끝나거

----- 뺐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10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1. ----- 200만원 이하: 연
--

2. ----- 300만원 이하: 연
--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5. (생략)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8. (생략)

②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4. 5. (현행과 같음)

6. -----
-- 일정 기간 동안 -----

7.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5.·6. (생략)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생략)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구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구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 5. (생략)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결비한

----- 면
적범위-----

5.·6. (현행과 같음)

7. 「사도법」 제4조-----

8.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유임야관리) -----

--- 조립(造林)하여 -----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
----- 고려-----

2. ~ 5. (현행과 같음)

6. ----- 두루 갖

구조로 설계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③ (생략)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4. (생략)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준 -----

7.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용허가) -----

-- 않는다.

제52조(사용책임) -----

-- 다음 -----
----- 지킴으로써 -----

1. (현행과 같음)

2. ---- 분실 -----

3.·4. (현행과 같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 8. (생략)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생략)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

- 1. -----

---- 에어컨 -----

2. ~ 8.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조치) ---- 사용중 -----

---- 파괴 -----

----- 분실 -----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에서 ----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 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② (생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

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

----- 않는다. -----

④ -----

----- 누설해서는 안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해당 -----

----- 감정평가법인 -----

등에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

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
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
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
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

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한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

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 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

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⑧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⑩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 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삭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

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제출일)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입법예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과 변상금 부과 및 납부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한 공유재산 처분 절차를 위한 관련 서식을 추가함(안 제28조).

나. 변상금 관련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서식을 추가함(안 제32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4.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전화 :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 이정원(전화: 042-608-5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잔여지중”을 “잔여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재산관리관에게”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으로,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을 “있고, 그 구유재산에 대하여”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를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할 수 있으며, 또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주소·성명·직명·연령”을 “주소·성명, 직명, 연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을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관 하고자 할”을 “이관할”로, “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미암아 구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상응하지아니할”을 “상응하지 않을”로, “인도전”을 “인도 전”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생략 할”을 “생략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재하고”를 “올리고”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을 “확정한”으로, “매수 신청하면”을 “매수신청을 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임야)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할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해야 할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사양서”를 “시방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으로,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를 “권리관계”로, “기록유지”를 “기록·유지”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재산종류별”을 “재산의 종류별”로, “작성 관리”를 “작성·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산관리업무”를 “재산관리 업무”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당사유”를 “해당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은”을 “총괄재산관리관이”로,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증감이동보고)”를 “(증감 이동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감변동”을 “증감 변동”으로, “관계대장”을 “관련 대장”으로,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을 “증감 이동 보고서와 관련”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로, “재산을”을 “소관재산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공유재산매매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6의2서식)

4.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6.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이”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목적

5.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

제30조의 제목“(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 정리부를”을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4.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24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략)</p> <p>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 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 리한다.</p> <p>1. ~ 5. (생략)</p> <p>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 관(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 득 후 <u>잔여지</u>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재산은 업무주관실·단 ·과장)</p> <p>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 지 <u>아니한</u> 재산 또는 용도변경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관리상 필요한 경 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 정할 수 있다.</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p> | <p>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 ----- ----- <u>잔여지 중</u> ----- ----- -----</p> <p>③ ----- -- <u>않은</u> ----- ----- ----- ----- -----.</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p> |

재산총괄) ① (생략)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산관리관에게 -----

----- 소속 공무원-----

-----.

③ -----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

----- 있고, 그 구유재산에 대하여 -----
--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할 수 있으며, 또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아 -----

-----.

③ (생략)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
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
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
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
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
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
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
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
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
·연령 및 경력
3. ~ 5. (생략)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유
재산관리대장-----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경계선) -----

-- 않는 -----
-----.

제7조 (감수인의 지정) -----

-----.

1. (현행과 같음)
2. ----- 주소·성명, 직명, 연
령 -----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 이관할 -----

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 공유재산관리대장 -----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
----- 구유재산-----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

-- 상응하지 않을 -----
----- 인도 전-----
-----.

제17조(인계인수) -----
----- 해당 재산-----

-----.
----- 생략할 -----
-----.

1.·2. (현행과 같음)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9조(매수)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매수 신청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매수를 추진한다.

1. ~ 5. (생략)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
----- 해당 재산-----

② -----

----- 올리고 -----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매수) ① -----

----- 확정한 -----

----- 매수신청을 하면 -----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임야)대장 -----

7.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시 국·공유재산 및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③ (생략)

제20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 3. (생략)
-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 5. (생략)

② (생략)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된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할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해야 할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매수를 추진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축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시방서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

소관 -----
----- 권
리관계 -----

----- 기록·유지 -----
--.

1. ~ 4. (생략)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지적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1. ~ 4.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재산관리대장-----

-- 재산의 종류별-----
작성·관리-----, ----- 재산관리 업무-----

----- 알고 -----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 해당 사유-----

② 총괄재산관리관이 -----
----- 받은 경우-----

-----.

제23조(증감 이동 보고) ① -----
----- 증감 변동-----
----- 관련 대장-----

---- 증감 이동 보고서와 관련-----

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생략)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 다음 달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소관재산을 -----
----- 따라 -----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

| | |
|---|---|
| <p>6. (생략)</p> <p>② (생략)</p> <p>③ <u>재산관리관</u>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u>사용허가</u>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0조(<u>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u>)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u>사용허가</u>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제32조(<u>변상금의 청문 등</u>) 변상금 <u>부과</u>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u>변상금사전통지</u>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 <p><u>기간</u></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산관리관</u>이 ----- ----- <u>사용·수익</u> <u>허가</u>----- -----.</p> <p>제30조(<u>대부 및 사용·수익허가</u> <u>정리대장</u>) ----- ----- <u>사용·수익허가</u> 정리대장을 -- -----.</p> <p>제32조(<u>변상금의 부과 등</u>) 조례 <u>제61조 및 제62조에</u> 따른 변상 금의 부과, 분할납부 및 징수유 예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변상금사전통지서</u>(별지 제23 <u>호서식</u>) 2. <u>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u> <u>서</u>(별지 제23의2서식) 3. <u>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u>(별지 <u>제24호서식</u>) 4. <u>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u>(별지 <u>제24의2서식</u>)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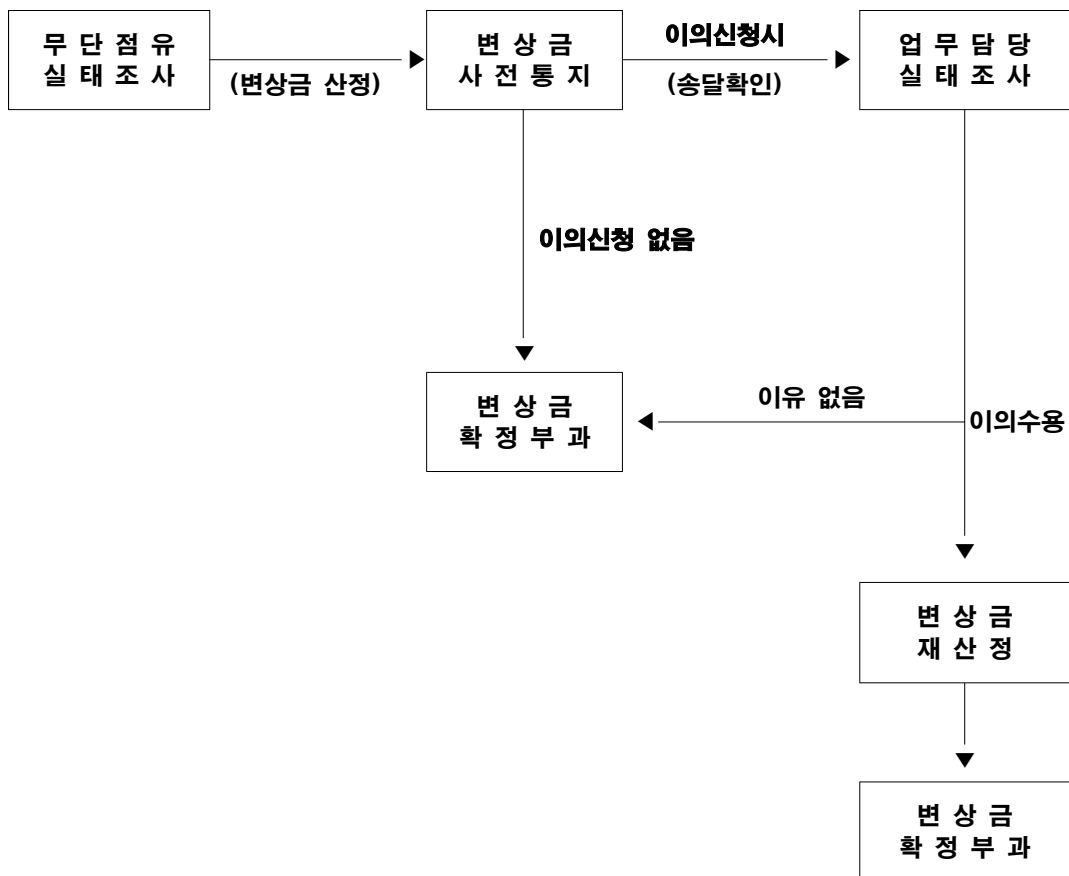
|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 | | | | | |
|--|------|-------------|-------------|------|-----------------|----|
| 대상자 | ① 성명 | | | | ② 생년월일 | |
| | ③ 주소 | | | | ④ 전화번호 | |
| ⑤ 부과 내용 | | | | | | |
| 재산의 표시 | | | 점유면적 (㎡) | 부과기간 | 변상금 [예상] (원)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u> </u>년 <u> </u>월 <u> </u>일까지 의견서(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p> <p>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p> | | | | | | |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 처 리 기 관 | 대 상 자 |
|-------------------------------|--------|
|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 점유·사용자 |

처 리 절 차



[별지 제23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항 목 | 통 지 내 용 |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 변 상 금 분 할 납 부 신 청 서 | | | | | | |
|---------------------|-------------|-----|--------|-------------|----|----|
| 점유 재산의 표시 | | | 분납 형식 | 비고 | | |
| 소재지 | 점유면적 (㎡) | | | | | |
| | | | 회 분납 | | | |
| 분할납부 신청 내역 | | | | | | |
| 변상금 총액(원) | 회차 | 납부일 | 변상금(원) | 연부이자 (원) | 합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

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일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제출일)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21. 6. 9. 시행)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의무적 설치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항을 기존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및 안 제8조, 안 제10조).

다. 대덕스포츠클럽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15일 이내” 에서 “2개월 이내” 로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4.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 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42-608-6593, FAX : 042-608-3823, E-mail : dol11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도가 램(전화 : 042-608-65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으로, “위촉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덕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협의회”를 “구청장은”으로, “위원을”을 “해당 위원을”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2회”를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두퇴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자”를 “두퇴,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중 “정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를 “협의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15일”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의 <u>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관련 단체의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u> 2. (생략) 3. <u>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제5조(구성) ① <u>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및 위촉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u></p> | <p>제3조(설치) ----- ----- ----- ----- <u>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u> ----- ----- ----- <u>둔다.</u></p> <p>제4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진흥계획의 수립</u>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u> <p>제5조(구성) ① <u>협의회는 구청장과 대덕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u><삭 제></u></p> |

과장, 구 체육회 사무국장과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④ (생략)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

----- 위촉 위원-----

--.

제7조(해촉) 구청장은 -----

----- 해당 위
원을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 1회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두퇴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 ③ (생략)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
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
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퇴,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자-----

제10조(운영세칙) ----- 규정
한 것 -- 협의회의 운영에 ---

-----.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개월 -----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